

# 해외·조세·동향·보고

Volume 1, 2009년 02월

## 중국

- 중국 거래세 (Turnover Tax) 관련 조세개편 시행
  - 중국 정부는 '09. 1. 1일자로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 관련 새로운 법규 및 시행규칙을 발효
  - '08. 1월 내·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차등 적용을 폐지한 조세개혁정책 단행 이후의 2단계 조세개혁 조치임
  - 이러한 세제개편은 현재 부가가치세 및 영업세 규정을 통합하여 그동안 의도되지 않은 특정 산업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함
- 현재 중국의 거래세는 다음의 3가지 세목으로 구성.
  - 1. 부가가치세 (VAT) : 유형상품 판매에 과세
  - 2. 영업세 (BT) : 서비스 및 용역에 과세
  - 3. 소비세 (CT) : 사치물품, 공해유발제품에 과세

## 덴마크

- 덴마크 세제위원회(Danish Tax Commission), 개인납세자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혁안 발표
  - 세제위원회는 모기지세 공제(Mortgage Tax Relief) 혜택 축소, 법인세 우대조치 삭제 및 환경관련세율 인상 등을

통하여 조성되는 재원을 개인납세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

- 현재 덴마크의 개인소득세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복잡하고 세율 또한 높은 편이며, 이와 관련한 지방세(지역별로 22.7% ~ 27.8%), 교회세(Church Tax)와 같은 부가세 또한 큰 부담

**개인소득세 세율구조 (과세표준 = 소득세+자본이득세)**

과세표준	세율
265,500 DKK 미만	5.25%
265,500 ~ 318,700 미만	6%
318,700 초과	15%

(자료 : Key Tax Features of Member countries 2006, IBFD)

- 또한 현행 각 8%인 건강보험료, 노동시장기여금 등이 별도로 부과되어 40,000 유로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최고한계세율이 약 60%에 달하는 실정임

- 세제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소득세는 법정최고세율이 현재 15% → 13.5%로 최저세율은 5.25% → 3.75%로 낮아지고 중간단계인 6%는 폐지되어 세율체계 또한 단순화될 예정

**영국**

- 영국 정부와 건지(Guernsey)<sup>1)</sup>는 과세목적을 위한 양자간 정보교환 (Bilateral Agreement for Exchange of

1) Guernsey : 면적은 78.1㎢, 인구는 6만 3100명(2003)이다. 주도(主都)는 세인트피터포트이다. 영국령이나 프랑스 해안에서 불과 48km 떨어진 곳에 있다. 주민의 생활양식도 프랑스풍이 짙고 언어도 노르만 프랑스어(語)를 사용한다. 35개 협조적 조세피난처(Cooperative Jurisdictions)에 포함됨.

Information) 협정을 체결 ('09. 1. 20)

- 이로써 건지는 10번째 양자 간 정보교환 협정에 체결한 것이며, 영국과 건지와 정치·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본 협정은 양국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OECD는 이러한 정보교환협정 체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투명성 제고와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
- Jeffrey Owens, OECD · CTPA 국장은 “어떠한 조세 피난처도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중심지로써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다”고 밝힘
- OECD는 2000년 이후 (2006년 현재) 이러한 조세피난처 국가들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오고 있음.

### 35개 조세피난처 국가 명단 (투명성 제고와 조세 정보교환 협정 체결)

Anguilla	Cook Islands	Malta	San Marino
Antigua & Barbuda	Cyprus	Marshall Islands	Seychelles
Aruba	Dominica	Mauritius	St. Lucia
Bahamas	Gibraltar	Montserrat	St. Kitts & Nevis
Bahrain	Grenada	Nauru	St. Vincent & the Grenadines
Bermuda	Guernsey	Netherlands Antilles	Turks & Caicos Islands
Belize	Isle of Man	Niue	US Virgin Islands
British Virginislands	Jersey	Panama	Vanuatu
Cayman Islands	Liberia	Samoa	

(자료 : OECD)

## 홍콩

### □ 홍콩-베트남 조세협약 체결

○ 홍콩정부는 베트남과의 조세협약을 체결함. 이에 따라 홍콩은 벨기에, 태국, 중국, 룩셈부르크 이어 OECD 조세협약모델에 근거한 5번째 협약을 체결

- 본 협약은 베트남에서는 2010년 1월 1일, 홍콩에서는 2010년 4월 1일부터 발효됨.

-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세율	소득원천	배당소득	이자소득	로열티	양도소득세 (주식양도 차익)
○ 협약상 원천세율		10%	10% <sup>주1)</sup>	7%/10%	주 2)
○ 홍콩 국내 원천세율		0%	0%	4.95%	0%
○ 베트남 국내 원천세율		0%	10%	10%	28% <sup>주3)</sup>

주 1) 홍콩정부 및 양자 간에 협의에 의해 인정된 홍콩 소재 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0% 적용

주 2) 주로 부동산(베트남 소재)으로 이루어진 법인체인 경우와 15% 이상의株式이 양도된 경우 과세

주 3) '09. 1월 1일부로 25%로 세율 인하 (베트남)

## OECDdirect ('09.02.24호)

### □ OECD는 기부금을 통한 조세포탈의 위험성을 경고

- OECD는 “Report on Abuse of Charities for Money Laundering and Tax Evasion” 보고서를 통해 이미 많은 OECD 회원국에서 기부금을 통한 조세포탈 및 자금세탁 행위가 증대되고 있고, 몇몇 국가에서는 그 탈세규모가 수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기부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에 의해 돈세탁 및 탈세 등 부정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기부금을 통한 부정행위가 19개 회원국에서 인지되고 있으며, 이를 적발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실정
  - Red Flag Indicator 방법 등을 적용하고 세무당국으로 하여금 불량거래를 사전에 적발하고, 사후에 이를 참고하여 세무조사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 증대

## OECDdirect ('09.01.30호)

### □ 호주-맨섬<sup>2)</sup>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협약 체결

2) 면적은 572km<sup>2</sup>, 인구는 7만 7300명(2003)이다. 최고점 610m이다. 주도(主都)는 더글러스이다. 빙하기에 형성된 대지상(臺地狀)의 기복이 완만한 지형이다. 기후가 온난하여 아열대성 식물이 자생하며, 경치가 아름다워

- 호주와 맨섬 정부는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개인소득세에 관한 과세권 배분 및 조정을 확정
  -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양자 간 협력 및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

[참고문헌]

- Tax News.com
- OECD Direct
- Ernst & Young, 2009 January, Global Dispatch, Volume 10 Issue 1.
- “Tax Co-operation: Towards a level playing field - 2008 Assessment by the Global Forum on Taxation”, CTPA, OECD
- “35 Jurisdiction committed on Improving Transparency & Establishing effective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OECD

---

요양·관광지를 이룬다. 35개 협조적 조세피난처 중 한 곳.